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6월 23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예방접종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대상포진, 인플루엔자 외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예방접종 종류, 대상,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~제7조)
- 예방접종업무 위탁, 비용 상환을 규정함(안 제8조~제10조).
- 예방접종 피해보상 및 준용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

- 기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」는 폐지함(안 부칙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예방접종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통합 조례로, 대상포진·인플루엔자 외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동 제정안은 총 12개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
 - 안 제5조에서는 인플루엔자, 대상포진, 백일해 등 예방접종의 종류에 대하여
 -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대상 및 비용의 지원에 대하여
 - 안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 기관 및 실시 횟수에 대하여
 - 안 제8조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하여
 - 안 제9조에서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하여
 - 안 제10조에서는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에 대하여
 - 안 제11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
- 인플루엔자 및 백일해는 감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고,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에 본 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종류와 지원 대상자는 합당하다고 사료됨.
-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없이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는

전해가 다수이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취약 계층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.

-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노원구와 성동구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백일해는 백일해균(*Bordetella pertussis*)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고위험군은 1세 미만의 영아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 대상자 중 임신부가 「백일해 통합관리지침」에 명시되어 있으며 성인의 경우 백일해 예방접종을 1회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음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